



(사)대한볼링협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관련규정**



목 차

1.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	1
2.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격.....	2
3.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시행세칙.....	4
4. 공인경기장 및 공식경기장 선정 시행세칙.....	6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정

1986. 2.12.제정
1991. 4.25.개정
1992.12.29.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함)가 주최, 주관, 공인 또는 승인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시설용구 포함) 및 용구에 대한 공인 및 검정방법을 제도화하여 용구에 대한 품질향상을 기하고 규격품 사용으로 경기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기용품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기용품 중 본 협회가 경기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용구, 경기용품, 경기시설용 기자재에 적용한다.

제3조 (심의)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본 규정의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장 공인 및 검정

제4조 (절 차)

- ① 본 협회의 공인 및 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나 개인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 가. 공인신청서 1부. (본 협회 양식)
 - 나. 사업자 등록증 1부.
 - 다. 공인료 납부증 사본 1부.
- ② 공인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는 서류심사 후 검사관을 해당 업체에 파견한다.
- ③ 검사를 완료한 검사관은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즉시 제출한다.
- ④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심사, 공인가부를 판

정하여 1주일 이내에 해당업체에 서류로 통보한다.

⑤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는 공인 합격된 용구, 용품, 경기시설 등에 본 협회 소정의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⑥ 본 협회 검사관은 공인검사 후 합격된 볼, 핀 등의 재고번호 등을 기입한 일건서류를 작성, 보고한다.

제5조 (기준 및 규격)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는 경기용품, 용구, 경기장 등에 관한 규격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유효기간 및 검정료) 공인 유효기간 및 검정료는 공인위원회가 결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품명		공인료	유효기간	비고
볼		1,000원		
핀		100원		
레인	신규	30,000원	1년	시,도지원 10,000원
	재	20,000원	1년	시,도지원 10,000원

제7조 (부 칙)

1. 본 규정은 1992년 12월 29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에 따라 대한볼링협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규정 (1986.2.12.제정 / 1991.4.25. 1차개정)은 폐지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규격

제1장 정규볼링레인 규격

제101조 (구성) 정규 볼링레인은 (가터, 킥백, 어프로치 포함) 나무 혹은 다른 공인물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핀덱의 끝부분, 꼬리판, 킥백, 가터, 가터 몰딩 등은 화학섬유나 다른 합성물질로 보강될 수 있다. 어프로치는 아래에 정의된 규정에 따라 다른 물질로 제조될 수 있다.

제102조 (어프로치) 뒤로부터 시작 파울라인까지는 15피트(4.572m) 이하이면 안 되며 깨끗하고 수평이어야 한다. 1/4인치(6.35mm)이상의 홈이나 구멍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03조 (파울라인) 넓이는 3/8인치-1인치(0.952-2.54cm)사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분명하게 레인에 새기거나 박아야 한다. 또한 레인으로부터 선수 근처가 미칠 수 없는 지역 내의 모든 벽이나 기둥까지 연장되어 표시해야 한다.

제104조 (파울검색장치) 공인된 볼링장에는 파울검색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하거나 검색을 위한 심판석이 파울라인 위 혹은 바로 뒤에 마련되어 있어서 심판으로 하여금 모든 파울을 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5조 (레인길이) 파울라인으로부터 핏트 (꼬리판 미포함)까지는 62피트 10 3/16인치(19.37m)이며 1/2인치 (1.27cm)정도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이 허용될 수 있다. 1/2인치의 허용오차를 포함해서 파울라인 중심에서 1번핀 스팟트 중심까지는 60피트 (18.288m)이어야만 한다. 1번핀 스팟트 중심에서 핏트 (꼬리판 미포함)까지는 34 3/16인치 (86.836cm)이어야 한다.

제106조 (레인넓이) 넓이는 41인치 (1.0414m)이상 42인치 (1.0668m)이내여야 한다. 양쪽 가터를 포함해서 60인치 (1.524m)이상 60 1/4 (1.53m)이내여야 한다. 예: 한 레인이 42인치라면 한 가터의 넓이는 9인치 (22.86cm) 이상 9 1/8인치 (23.177cm)이내여야 한다.

제107조 (표면) 파울라인과 꼬리판 사이의 레인표면은 40/1000인치 (0.1016cm)이상의 어떠한 흠이나 돌출부가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40/1000 인치를 넘는 가로, 세로 경사가 져서도 안된다. 핀덱에는 42인치 넓이에 걸쳐서 전후 0.1873(3/16)인치 (4/762mm)이상의 세로경사가 져서는 안된다.

제108조 (핀덱) 완전히 단단한 나무로 만들거나 또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른 공인물질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가터에 가장 가까운 측면에는 제조당시 두께 1/4인치 (0.635cm) 넓이 1 1/2인치 (3.81cm)이하의 섬유조각을 붙일 수 있으며 1번핀 내측으로부터 핏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섬유조각은 수직으로 설치하여 핀덱 표면에 노출된 섬유의 넓이가 1/4인치 (6.3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핀덱 양쪽 끝 보드는 반경 5/32인치 반경이 되었을 때 복귀시켜야만 한다.

제109조 (꼬리판) 레인 뒷부분에 두께 2인치 (5.08cm) 이하의 꼬리판을 부착할 수 있다. 7, 8, 9, 10번 핀 스팟트 중심 뒤에 꼬리판을 포함하여 5인치 (12.7cm) 이상 평평한 표면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0조 (가터) 각 레인 양쪽에 설치해야만 하고 파울라인으로부터 핏지역까지 평형하게 계속 되어야 한다.

제111조 (가터의 넓이) 9인치 (22.86cm)이상 9 1/2인치(24.13cm) 이내여야 한다. 레인을 포함한 넓이는 60인치(1.524m) 이상 60 1/4인치 (1.53m)이내여야 한다.

제112조 (가터의 깊이) 1번 핀 스팟트 앞쪽 15인치 (38.1cm)또는 반대쪽에는 바닥이 사각형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사각형 단면은 점차 감소하여 레인 표면으로부터 가장 얇은 곳의 깊이는 3 1/2인치 (8.89cm) 이하여서는 안 되며 가장 깊은곳의 깊이는 3 3/4인치 (9.52cm)이상이 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가터는 오목한 모양으로 하여 나무나 다른 합성물질로 설치해야 한다. 제조당시 가터의 단면은 중앙에서 측정할 때 깊이가 적어도 1 7/8인치 (4.76256cm)이상이어야 한다.

제113조 (몰딩) 몰딩조각은 1번핀 스팳트 앞뒤로 15인치 (38.1cm) 이내에는 높이 7/8인치 (2.2225cm), 넓이 3/4인치 (1.905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7번핀과 10번핀 스팳트 측면에는 점차적으로 높이를 1 1/2인치 (3.81cm)로 증가시켜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제114조 (핀위치) 핀의 위치는 레인에 새겨져 있거나 분명하게 그려져 있어야 한다. 핀위치의 직경은 2 1/4인치 (5.715cm)로서 중심과 중심사이의 간격은 12인치 (30.48cm) 이하여야 한다. 각 핀의 위치는 왼쪽과 같이 숫자로 표시된다. 7,8,9,10번핀 중심부터 핏까지 거리는 꼬리판을 포함하지 않고 3인치 (7.62cm)여야 한다. 7, 10번핀 위치 중심으로부터 인접 핀택 측면까지는 1 1/2인치(6.35cm)이상 3인치 (7.62cm)이내여야 한다. 구석핀 위치 중심과 인접 가터의 넓이를 포함한 레인 끝 사이의 거리는 너무칸막이까지 12인치 (30.48cm)이상 12 1/8인치(30.7975cm)이내여야 한다. 1번핀 위치 중심으로부터 나무칸막이 정면까지는 30인치(76.2cm)이하여야 한다. 1번핀 위치 중심으로부터 7,8,9,10번 열의 중심을 연결한 선까지 거리는 31 3/16인치 (79.216cm), 꼬리판을 포함하지 않은 핏까지 거리는 34 3/16인치(86.836cm)여야 한다.

제115조 (핀셀팅 장치) 핀셀팅 장치를 사용 중인 것은 매년 점검받아야 하며 모순이 발견되면 고쳐질 때까지 공인받을 수 없다.

제116조 (킥백) 킥백 혹은 측면 칸막이는 레인으로부터 17인치 (43.18cm) 이상 24인치 (60.96cm) 이내로 1번핀 스팳트 앞쪽 15인치 (38.1cm) 또는 반대쪽으로부터 리어컷션 벽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레인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하며 두 킥백의 마주보는 표면사이의 간격은 60인치 (1.524m) 이상 60 1/4인치 (1.530m)이내여야한다.

제117조 (섬유판) 킥백은 두께 3/16인치 (0.476cm)를 초과하지 않는 한층의 단단한 고무판 섬유로 포장할 수 있다.

제118조 (핏) 자동 핀셀팅 장치기가 없는 레인에서는 핏마루부터 레인 상단까지는 10인치 (25.4cm)이상이어야 하며 핏상단부터 레인 상단까지는 9 1/2인치 (76.2cm)이상이어야 한다. 자동 핀셀팅 장치기가 있는 핏지역 사양은 그때그때 공인된 각 핀설치기에 따라 결정된다.

제119조 (리어컷선) 반드시 어두운 색상 물질로 포장되어야 하며 핀이 반동으로 인해 레인에 뛰어들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120조 (표기 및 모양) 레인과 어프로치상에 표기나 표식은 다음과 같은 사양에 따라야 한다. 파울라인 앞쪽 12-16 피트 (3.6576 - 4.8768m) 지역에 최고 7개의 표식을 레인위에 찍거나 새길 수 있다. 각 표식들은 균일해야 하며 맞춤못, 화살표, 다이아몬드, 삼각형 또는 장방형으로 표기될 수 있다. 모든 표식들은 넓이 1 1/4인치(3.175cm), 길이 6인치(15.24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서로 균일한 거리에 균일한 패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파울라인 앞쪽 6-8피트 (1.8288-2.4384m) 지역에 파울라인과 평행하게 최고 10개의 유도표를 찍거나 새길 수 있다. 유도표는 균일하게 원형이어야 하며 직경이 3/4인치 (1.905cm)를 초과할 수 없다. 어프로치에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 각각 최고 7개의 유도표를 표시할 수 있다.

2-6인치(5.08-15.24cm), 9-10피트(2.7432-3.047m), 11-12피트(3.3528-3.6576m), 14-15피트 (4.2672-4.572m) 유도표들은 파울라인에 평행하게 균일한 원형으로 표시하되 직경이 3/4인치 (1.905cm)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표기나 표식은 나무, 섬유질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레인, 어프로치 표면과 균일하게 평면을 유지해야 한다. 찍어서 표시할 경우에는 원목에 바로 찍도록 하고 그 위에 락카나 유사한 투명물질로 덮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설치 방식은 적어도 한 쌍의 레인 이상은 그 모양이나 크기가 동일해야 한다.

제2장 볼링 핀 규격

제201조 (재료) 공인된 핀은 흠이 없고 단단한 단풍나무로 만들어져야 한다. 각 핀은 한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2편 이상의 얇은 조각으로 붙여 수직축 평행으로 아래 규격에 맞도록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목재나 사용된 적이 있는 목재들은 KBA에 의해 설정된 규격에 따라 새핀 또는 재생핀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제202조 (무게)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핀의 무게는 3Lbs 2oz(1,419g)이상 3Lbs 10oz (1,645g)이내여야 하며 한셴트 내에서 핀들간의 무게가 4oz (113g)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한셴트의 핀들은 구조, 재료, 표시, 모양, 코팅 등 외관상 균일해야 한다.

제203조 (균형) 모든 핀들의 무게중심은 핀 바닥으로부터 5 40/64 - 5 60/64인치 (14.2875-15.08cm)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204조 (함수량) 모든 핀들의 수분 함유량은 6%이상 12%미만이어야 한다. 2핀 이상을 붙여서 제작한 핀은 아교칠 했을 때 각 핀당 2%이하여야 한다.

제205조 (끝마무리) 한 개 혹은 합판으로 제작된 핀은 정규 채택된 목재 끝마무리에 따라 마무리되며 이때 코팅은 목부분 표시, 구분심볼, 이름등을 제외하고는 투명 혹은 하얗게 칠해져야 하고 그 두께가 4/1000인치 (0.1016mm)까지 허용된다.

제206조 (모양 및 크기) 각 핀의 높이는 15인치 (38.1cm), 허용오차 2/64(0.793mm)이다. 모든 핀은 바닥에 2인치 (5.08cm)이상의 직경으로 공인된 플라스틱 또는 파이프가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KBA TENPIN SPECIFICATIONS TOLERANCE

STATION	DIAMETER	MAXIMUM	MINIMUM	
13.1/2" Above Base	2.547"	2.578"	2.516"	
12.5/8" Above Base	2.406"	2.437"	2.375"	
11.3/4" Above Base	2.094"	2.125"	2.063"	
10.7/6" Above Base	1.870"	1.901"	1.839"	
10" Above Base	1.797"	1.828"	1.766"	
9.3/9" Above Base	1.965"	1.996"	1.934"	
8.5/8" Above Base	2.472"	2.503"	2.441"	
7.1/4" Above Base	3.703"	3.734"	3.672"	
5.7/8" Above Base	4.563"	4.594"	4.532"	
4.1/2" Above Base	4.766"	4.797"	4.735"	
3.3/8" Above Base	4.510"	4.541"	4.479"	
2.1/4" Above Base	3.906"	4.937"	3.875"	
3/4" Above Base	2.859"	2.859"	2.797"	
Base-with 5/32 radius - Flat diameler		2.031"	2.062"	2.000"
Base-with no radius - Flat diameler		2.250"	2.281"	2.29"

핀의 상단에는 반경 1.273인치 (3.233cm), 허용오차 2/64인치 (0.794mm) 크기로 균일하게 둥글어져 있어야 한다.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의 기울기는 완만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모든 선들이 우아한 곡선이 되어야 한다. 바닥 부착물이 바닥보다 더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 0.025인치 (0.0636cm)정도는 오목하게 들어갈 수 있다. 모든 핀은 제조 당시 바닥 바깥 가장자리가 5/32 (0.156)인치 (0.396cm) ± 2/64(0.031)인치 (0.078cm)로 둥글어져야만 한다. 둥근 가장자리를 제외한 직경은 2인치 (5.08cm)미만이어야 한다.

제3장 볼링 볼 규격

제301조 (재료) 비금속성 합성물로 무게, 크기, 균형이 다음 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302조 (무게 및 크기) 원둘레는 27인치 (68.58cm)를 무게는 16Lbs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경은 일정해야만 한다. 볼의 표면은 표기, 글씨, 볼을 잡기 위한 구멍을 제외하고는 흠이 없어야 한다. 대회 개최 시 볼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공 무게는 16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

2. 볼 구멍 한계는 아래와 같다.

a. 구멍은 공을 잡기 위한 다섯을 초과할 수 없다.

b. 하나의 구멍은 균형을 잡기 위한 것으로 직경 1 1/4인치를 초과할 수 없다.

c. 손가락 혹은 엄지로 통하는 통풍구는 직경이 1/4인치 (0.635cm)를 초과할 수 없다.

d. 검사를 위한 구멍은 직경 5/8인치 (1.5875cm), 깊이 1/8인치 (0.3175cm)를 초과할 수 없다.

3. 볼 균형 (아래규정) 참고

4. 볼 강도 (아래규정) 참고

※ 대회 개최 시 볼검사 항목이 아닌 것

1. 볼 원주

2. 동적 마찰 계수

3. 상표

제303조 (균형) 볼링공은 6면 이상이 적당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오차는 볼의 균형을 유지키 위해 허용된다.

1. 10파운드 (4.65kg) 및 이상 볼

a. 상단과 하단사이 무게차이 3oz (86.05g) 이하

b. 좌우, 전후 사이 무게차이 1oz (28.35g) 이하

c. 엄지손가락 구멍이 없는 경우 a항목에서는 1oz 이하여야 한다.

d. 핑거구멍이 없는 경우 역시 1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e. 역시 아무런 구멍 없이 사용하는 볼도 1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2. 10-8 파운드 사이 볼

- a. 상단과 하단 사이의 무게차이 2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됨.
- b. 전후, 좌우 사이의 무게차이 3/4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됨.
- c. 엄지손가락 구멍이 없는 경우 상, 하단 사이의 무게차이는 3/4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됨.
- d. 핑거구멍이 없는 경우 전후, 좌우 사이의 무게차이가 3/4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됨.
- e. 구멍이 전혀 없는 경우 1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됨.

3. 8 파운드 이하 볼

- a. 상, 하단 사이의 무게차이가 3/4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됨.
- b. 전후, 좌우 사이의 무게차이가 3/4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됨.
- c. 엄지손가락 구멍이 없는 경우 상, 하단 사이의 무게차이는 3/4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됨.
- d. 구멍이 전혀 없는 경우 3/4oz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됨.

정규 볼링볼에는 유동성 부착물을 붙일수는 없다. 다만 손가락 넣는 구멍사이의 간격,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치는 부착될 수 있지만 투구도중 고정되어 있어서 파괴되지 않고는 볼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단, 금속이나 볼을 만들때 사용된 본질과 상이한 물질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볼의 무게나 균형이 어긋날 경우 그 볼은 어떠한 KBA경기에서도 사용될 수 없다. 볼에 재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플라그를 투입할 수 있다. 또한 유도, 관찰, 혹은 표시를 위해 볼표면에 어떠한 표식을 넣을 경우 볼 표면은 매끄럽게 유지해야 되며 이 경우에도 볼의 재질과 거의 비슷해야 하며 볼의 규격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물질은 볼의 표면에 부착될 수 없다. 위 금지사항은 볼의 제작, 여하한 볼의 개조 시에도 모두 적용된다.

제304조 (강도) 볼의 표면강도는 어느 KBA 공인 대회에서는 실온하에서 측정하여 72 Durometer 'D' 이상이어야 한다. 제작된 볼의 표면강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이나 솔벤트 기타 다른 방법등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주) 볼 표면강도는 "Durometer"(기구)로 검사하여 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검사절차는 아래와 같다. 볼에 지공된 부분에서 시작하여 볼이 구르는 지역을 따라 공평히 나누어 기구를 이용하여 볼 표면에 90도의 각도를 측정한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하여 볼 표면강도는 "D"로 표시한다. 모든 측정은 실내온에서 측정하고 지나치게 춥거나 더울 경우 진정한 측정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지역에서 검사해야 한다.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시행세칙

1996. 3.25.제정
2015. 1.12.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설치근거 및 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한볼링협회 (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제정하며 볼링 경기용품의 규격품 생산과 수입된 우수 경기용품을 경기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경기력 향상과 볼링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회의 시도지부, 전국규모의 연맹체 및 그 산하단체에서 주최, 주관, 승인, 후원하는 모든 경기에 사용할 레인, 볼, 등 경기용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레인공인

제3조 (레인공인 신청절차)

1. 볼링 경기장의 사업주는 해당 경기장 소재지의 본 협회 시·도지부나 본 협회에 별표 제1호의 신청서에 의하여 레인공인을 신청한다.
2. 레인공인 신청 시 별표 제2호에 명시된 레인공인료를 전액 통화로 납부하여야한다.

제4조 (레인공인검사)

1. 레인공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본 협회 공인검정위원이 해당 경기장에 파견되어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규격에 의거 레인을 검사한다.
2. 검사 후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며 합격된 경기장에는 검사결과표와 별표 제3호서식의 경기장 공인증과 공인경기장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2매 발송한다.
3. 불합격된 경기장은 검사위원의 검사 소견서를 발송하며 불합격된 내용의 시정을 통보한다.
4. 시정 완료 후 재검사를 요청할 경우는 공인료를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시정 불가능한 경기장은 납부된 공인료 중 검사비 5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5조 (레인공인의 유효기간) 레인공인의 유효기간은 통상 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공인기간 중 레인의 변화, 레인의 파손, 규격의 인위적 변화 등은 예외로 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용어의 정의)

1. 신규 레인공인이라 함은 개장 후 최초로 실시한 레인공인과 공인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이후 레인공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공인이라 함은 레인공인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레인공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볼링볼

제7조 (대회사용구 등록대상)

1. 국내생산품

① 본 협회가 인정하는 공인 시험기관의 설비 및 제품의 시험 성적 결과가 본 협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규격에 합당한 판정을 받은 업체

② 미국볼링협회(USBC)의 공인을 획득한 업체

2. 수입품

①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볼링볼 생산업체의 볼을 국내 독점으로 수입하여 공급하는 업체

②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볼링볼 생산업체의 볼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업체

③ 기타 수입방법에 의한 수입볼

제8조 (대회사용구 등록신청)

1. 본 협회에 대회사용구 등록신청 업체는 등록계약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내생산업체

①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월간 생산량 현황

③ 제품설명서

④ 공인시설 기관의 시험 성적표 사본(해당업체)

- ⑤ 미국불링협회 (USBC) 시험결과서 사본(해당업체)
- ⑥ 대회사용구 등록신청서 (본 협회 양식)

나. 수입업체

-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② 법인 등기부 등본 (해당업체)
- ③ 년, 월 간 수입계획서 (품목별 표기)
- ④ 원산지 증명서 (해당업체)
- ⑤ 생산품(계약제품)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 (해당업체)
- ⑥ 제품설명서
- ⑦ 수입면장 사본 (매 공인신청시마다 제출)
- ⑧ 대회사용구 등록신청서 (본 협회 양식)

다. 개인

- ① 원산지증명서
- ② 대회사용구 등록신청서 (본 협회 양식)

2. 본 협회와 대회사용구 등록신청 업체 간에는 별표 제4호의 서식에 의한 대회사용구 등록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 (대회사용구 등록방법)

1. 국내생산품

동일제품의 생산능력이 있는 기술 및 시설보유와 제품의 시험결과 분석에 의해 생산업체를 “대회사용구 생산업체”로 승인하며 스티커를 발급한다.

2. 수입업체 및 개인

본 협회 규격 및 국제규격 (USBC 규격포함)에 합격된 볼에 대하여 제출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검사 후 대회사용구로 등록하고 스티커를 발급한다.

3. 본 협회는 대회사용구로 등록된 볼의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0조 (대회사용구 등록비) 대회사용구 등록비는 별표 제2호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대회사용구 등록비 수불) 대회사용구 등록비는 수입 통관된 수입면장을 제출하여 대회사용구 등록신청 시 통화로 지불하며 국내생산업체는 대회사용구 등록계약 시 지불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회사용구 등록계약 유효기간) 대회사용구 생산 및 수입 업체 간의 등록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공인검정위원위촉) 공인 및 검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이사의 추천으로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공인검정위원을 위촉한다.

제14조 (여비) 공인업무 수행상 공인검정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요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본 시행 세칙은 199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시행세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3조 본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레인 검사비 및 공인비

검사비	공인비		
3,000원/1레인	신규	30,000원/1레인	유효기간 1년
	재	20,000원/1레인	

※ 검사비는 공인의 합·불합격에 관계없이 선납부하여야 함.

대회사용구 등록비

품명	등록비	유효기간	비고
볼	1,000원/개		

대회사용구 등록 계약서

1996. 3.25. 제정

2015. 1.12. 개정

대한볼링협회(이하 “갑” 이라 칭한다)와 국제규격의 볼링볼을 제작(수입), 판매하는 업체, 개인(이하 “을” 이라 칭한다)인 _____ 간에 대한볼링협회 대회사용구 등록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대회사용구 등록계약의 목적)

대한볼링협회 규약 제4조 5항 및 경기용품공인 및 검정규정에 의거 경기용품의 국제규격 제작(수입)판매하여 경기자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기력 향상과 볼링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갑”의 책임)

1. “갑”은 본 계약 기간 중 제작(수입)된 국제규격의 볼링볼을 대회사용구로 인정하며 “갑”이 주최, 주관, 승인, 후원하는 모든 대회에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매 대회사용구 등록시 볼마다 스티커를 발급하며 제품명, 제품 일련번호를 기록, 유지한다.

제3조 (“을”의 책임)

1.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제작(수입)된 국제규격의 볼링볼에 대하여 모든 볼을 “갑”에게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2. “을”은 대한볼링협회 경기용품 규격에 따른 대회사용구를 공급하여야 하며 규격 위반 제품 공급 시 이를 통화로 변제한다.
3.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 (대회사용구 등록방법)

1. 대한볼링협회 공인 및 검정규정 시행세칙 제6조, 7조, 8조에 의하며 대회사용구 등록을 필한 국제규격의 생산(수입)된 모든 볼링볼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스티커를 발급한다.
2. “을”은 “갑”에게 대회사용구 등록신청 시 제품명과 제품번호 (Sel. No.)를 첨부한다.

제5조 (등록비)

1. 국내 생산업체의 등록비는 업체당 1년에 500만원으로 한다.
2. 수입 볼링볼의 등록비는 1개당 1,000원으로 한다.

제6조 (등록비 지불)

-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회사용구 등록신고 및 등록비를 지불한다.
1. 매회 수입 통관 수량을 수입면장에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2. “을”은 등록신청 시 등록비를 통화로써 “갑”에게 지불한다.

3. 국내 생산업체는 업체 등록신청 시 “갑”에게 지불한다.
4. 등록 행위 시 소요되는 제비용은 “갑”의 책임이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갑”과 “을”이 계약 만료 20일전까지 계약의 중지에 관한 사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의 경과 후 서류를 보완한다.
2. 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 위반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취소 혹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제8조 (계약해지)

“을”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할 경우 “갑”은 사전 예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1. “을”의 파산 및 업종전환
2.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3. “을”이 의도적으로 대한볼링협회 경기용품 규격에 위반된 볼링볼을 공급하였을 시
4. “을”이 세법 등 국내법규를 어겨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제9조 (시행)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볼링협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대회사용구 등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 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508호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회장 (직인)

“을”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공인경기장 및 공식경기장 선정 시행세칙

1996. 10.29.제정
1997. 10.21.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이하 “본 협회”)와 시도볼링협회가 주최, 주관, 공인, 승인한 각종대회가 국제규격과 본 협회 공인규격에 합당한 경기장에서 치루어져 경기력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볼링을 보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설치근거) 본 협회 경기용품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 제3조의 의거함.

제3조 (적용대상) 전국에 12(6쌍)레인 이상 설치된 정규규격 볼링경기장

제2장 공인경기장

제4조 (시설기준) 본 협회 공인검정규격에 합당한 레인규격과 아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레인수: 12레인(6쌍)이상 설치된 볼링경기장
2. 부대시설: 파울라인, 점수기록 확인설비 (자동스코어시스템이나 스코어 프로젝트), 합법한 조명시설, 환기시설, 락카, 탈의실, 스낵(레스토랑), 엠프 등 경기진행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갖추어 질 것,
3. 선수석과 관중석이 분리되어야 한다.

제5조 (경기장 공인절차)

- ① 경기장은 별표 제1호의 서식에 의해 시도협회를 경유 본 협회에 경기장 공인을 신청한다.
- ② 본 협회는 공인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표 제1호에 의한 공인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즉시 서면·통보한다.
- ③ 공인 신청 시 피수검자(경기장 대표)는 별표 제2호의 공인검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2항의 검사결과 합격통지를 받은 경기장은 별표 제2호의 공인료를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공인료를 수령한 본 협회는 별표 제3호의 경기장 공인증과 별표 제4호, 5호의 경기장 공인 스티커를 발행한다.

제6조 (공인료)

- ① 공인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협회 목표사업 수행에 사용한다.
- ② 공인료는 본 협회와 해당 경기장 소재지의 불링협회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분배한다.

제7조 (공인유효기간) 제5조의 절차에 의해 공인된 불링경기장의 공인 유효기간은 공인검사 합격 통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 (공인의 종류)

- ① 신규공인: 최초로 경기장 공인을 득하는 것이나 공인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경기장 공인을 득하는 것.
- ② 재공인: 경기장 공인이 1년 단위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공인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경기장 공인을 득하는 것.

제3장 공식경기장

제9조 (공식경기장 선정대상) 제2장 제3조, 제4조에 의거 공인된 불링경기장

제10조 (협약절차) 사단법인 대한불링협회와 시도불링협회가 주최, 주관, 공인, 승인하는 모든 대회의 경기진행을 위해 하기 절차로 본 협회와 공인경기장간 계약한다.

- ① 공식경기장 계약을 희망하는 경기장은 별표 제6호에 의거 시도불링협회에 공식경기장 계약을 신청한다.
- ② 공식경기장 계약을 신청한 경기장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본 협회와 공인경기장간 별표 제6호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 (유효기간) 공식경기장의 계약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 (공식경기장의 권리와 의무) 본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볼링경기장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권리

1. 본 협회와 시도볼링협회가 주최, 주관, 공인, 승인하는 모든 대회를 할 수 있다.
2. 지역단위의 리그를 본 협회의 공인을 받아 독립 운영할 수 있다.
3. 협약경기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 지역예선 시 경기장 대표를 선발할 수 있다.
4. 본 협회 행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② 의무

1.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공인검정규격에 합당한 경기장 규격을 유지하고 공인을 득한다.
2. 본 협회 회원이 회원증을 제시하고 경기장 이용 시 책정 게임료에서 200원 내지 400원 범위에서 감하여 주거나 지역실정에 따라 특별할인 해준다.
3. 본 협회 회원을 위하여 안내소에 본 협회가 제공한 양식에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회원우대 금액 내역을 기록하여 항시 게시한다.
4. 본 협회의 회원 모집 업무를 대행한다.
5. 본 협회와 시도협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6. 공식경기장은 공인 유효기간 내에 공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검사 합격수준을 유지한다.

제4장 부 칙

제1조 본 시행 세칙은 199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시행 세칙은 199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경기장 계약서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볼링경기장(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상호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공식경기장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볼링경기를 건전한 생활 스포츠로 정착시켜 볼링인구의 안정적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으로 볼링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

제 2 조 (계약근거)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공인경기장 및 공식경기장 선정 시행세칙”에 의함(별첨).

제 3 조 (“갑”의 의무) “갑”은 “을”이 실시하는 대회, 행사 등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지도록 적극 협력, 지원한다.

제 4 조 (회원 모집업무 대행) “을”은 “갑”의 “회원등록제도 시행세칙”에 따라 “을”소유 경기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갑”이 실시하는 회원 모집업무를 대행한다.

1. 회비의 징수
2. 회원증 발급
3. 회원증 발급 결과를 해당 시도볼링협회에 통보

제 5 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의 회원이 “을”소유 경기장 이용시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회원을 위해 고시된 금액(별표1)을 할인해 준다.

(전국회원 동일)

② “을”은 “갑”이 실시하는 레인공인 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공인검사 기준에 합격하도록 시설을 유지한다.

③ “을”은 “갑”이 승인하는 각종 리그를 운영한다.

④ “을”은 “갑”이 주최, 주관, 공인하는 전국대회에 소속 회원을 파견한다.

⑤ “을”은 “갑”이 리그운영, 기록의 공인등 공식행사를 위한 교육 실시시 해당 직원을 파견한다.

⑥ “을”은 “갑”과 체결한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회원 우대금액 내역을 항상 게시한다.

제 6 조 (“을”의 권리) ① “을”이 실시하는 대회의 공인 및 신규 리그 승인 요청

② “갑”이 주최, 주관, 공인, 후원하는 대회에 선수(소속회원) 파견

③ “갑”이 주최, 주관, 공인, 후원하는 대회 개최

④ “갑”이 제공하는 볼링 관련 정보 수령

제 7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갑”과 “을”이 계약만료 20일전까지 계약중지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경우 계약기간의 경과후라도 서류를 보완한다.

③ 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위반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 취소 혹은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제 8 조 (공식경기장 표시) ① “갑”은 “을”에게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공식경기장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제공한다.

② “을”은 “갑”과 공식경기장 계약 완료 후 “갑”이 제공하는 공식경기장 표식을 경기장 입구 및 안내소에 부착한다.

제 9 조 (시행) 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공인경기장 및 공식경기장 선정 시행세칙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협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공식경기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해당 시·도협회(장)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첨 : 1. 대한볼링협회 회원우대 할인금액 내역

“갑”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회관 508호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회장 김 길 두 (인)

“을”

해당 시·도볼링협회

<별표 1>

레 인 공 인 검 사 신 청 서

볼링장명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개장일자		레인수	
핀셋터 기종		스코어시스템	
레인의 종류		코팅의 종류 (우드레인시)	
레인생산업체명		최근 센딩업체명	
		최근 센딩일자	
검사요청일	1안>	. . ~ . .	.까지
	2안>	. . ~ . .	.까지

상기와 같이 레인공인검사를 요청하오니 공인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_____경기장 대표 _____(인)

_____시도지부장 _____(직인)

대한볼링협회 귀중